

■ 건축법 시행규칙 [별지 제27호의3서식] <개정 2021. 12. 31.>

운영 관리 계획서

I. 통합적용 지역현황

위치	지번
용도지역	면적 m ²

II. 통합적용 대상건축물 개요

동 별	규 모	용 도	구 조	건축설비

III. 통합적용 대상시설물

시설명	위 치	규 모	용 도	비 고

IV. 통합적용 사항

시설명	통합적용 내용	통합적용 효과

V. 그 밖의 참고사항

「건축법」 제7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운영관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제출안내

첨부서류	1.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배치도 1부 2. 통합적용 대상시설 유지·관리 및 비용분담계획서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-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- 제출하는 도면은 반드시 축척을 표시해야 합니다.
- 지번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, 「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.